

#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기준경비율 신고



국세청  
National Tax Service



# 1 경비율 제도 개요

## ■ 경비율 제도 개요

- 모든 사업자는 매출, 매입 등을 장부\*에 기장하여야 하지만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경우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에 의해 사업소득금액을 계산
  - \* 복식부기장부 또는 간편장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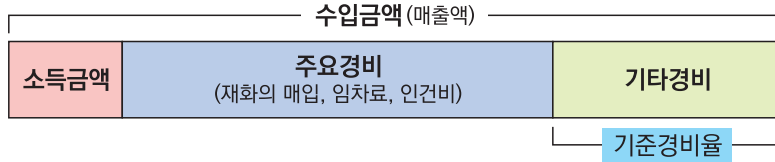
## ■ 경비율 적용 기준

- 2022년 귀속의 경우 2021년(직전연도)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에 따라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판단

업 종 별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1.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군 및 '다'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6천만원 이상자	6천만원 미만자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	3천6백만원 이상자	3천6백만원 미만자
3.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2천4백만원 이상자	2천4백만원 미만자

## 2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 ■ 소득금액 계산 방법



-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 ①기준소득금액과 ②비교소득금액 중 적은 금액
  - ① (기준소득금액) = 총수입금액<sup>1)</sup> - 주요경비<sup>2)</sup> - 기준경비율에 의한 경비<sup>3)</sup>
    - 1) (총수입금액) 사업수입금액 + 사업관련 보상금 +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세액공제액
    - 2) (주요경비) 매입비용 +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임차료 + 인건비
    - 3) (기준경비율에 의한 경비) 총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 (1/2)\*
      - \* 복식부기의무자에 한해 기준경비율의 1/2을 적용
  - ② (비교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1 - 단순경비율)] × 배율\*
    - \* 간편장부대상자 2.8배, 복식부기의무자 3.4배
-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보다 증빙수취의무가 한층 강화되어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이 없는 경우 세부담이 급격히 증가
  - 따라서, 단순경비율대상자에서 **기준경비율대상자로 전환**되면 수입금액이 **전년도와 비슷하거나 심지어 줄어든 경우에도 세부담이 급격히 증가**

### 〈 대리운전기사(업종코드 940913) 세액계산 사례<sup>1)</sup>〉

(천원)

	'21귀속(단순경비율 대상)	'22귀속(기준경비율 대상) <sup>2)</sup>
수입금액	<b>24,000</b>	<b>24,000</b>
경비율	단순경비율(73.7%)	기준경비율(28.1%)
소득금액	6,312	17,256
기본공제	1,500	1,500
과세표준	4,812	15,756
세율	6%	15%
산출세액	289	1,283
세액공제 (표준+전자신고)	90	90
납부세액	199	<b>1,193</b>
전년대비 증감률	-	<b>499%</b>

- 1)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이 없는 것으로 가정
- 2) 직전연도(2021년) 수입금액이 2,400만원 이상이므로 기준경비율 대상으로 전환

## ■ 주요경비

### ● 매입비용

-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상품·제품·원료·소모품 등 유형적 물건)과 동력·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의 매입

\* 건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매입은 제외

#### ※ 참고사항

1. 상품, 제품, 재료 등의 매입비용은 **매입부대비용**(운반비, 상하차비, 공과금, 보험료 등)을 포함하지 않은 순수한 물건 대금임
2. 원재료 **매입 관세**는 매입비용에 포함하고, **환급 관세**는 매입비용에서 차감
3. 원재료 등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액**은 매입비용에서 차감함
4. 부동산매매업자 등이 지출한 취득세는 매입비용에 포함

- 매입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용역의 예시

- ① 음식료 및 숙박료
- ② 창고료(보관료), 통신비
- ③ 보험료, 수수료, 광고선전비(광고선전용 재화의 매입은 매입비용)
- ④ 수선비(수선·수리용 재화의 매입은 매입비용)
- ⑤ 사업서비스, 교육서비스, 개인서비스, 보건서비스 및 기타 서비스(용역)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금액 등
- ⑥ 기부금 등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금액

### ●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임차료

-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및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타인에게서 임차하고 그 임차료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으로 함

- 리스료(금융리스, 운용리스)는 임차료에 포함하지 않음
- 인터넷 쇼핑몰 판매자가 인터넷 오픈마켓에 입점하여 약정에 따라 판매대금의 일정비율을 오픈마켓 운영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판매 수수료는 임차료에서 제외

### ● 인건비

- 종업원의 급여·임금, 일용근로자의 임금,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해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 참고사항

1. 인건비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금·수당(비과세 포함)
2.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고용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재보험료 등과 종업원에게 제공한 식사, 피복 등은 인건비에서 제외

## ■ 추계소득금액계산서 중 주요경비 계산명세 작성 방법

(35쪽 중 제25쪽)

### ⑩ 추계소득금액계산서(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용)

가. 소득금액 계산

종락

나. 당기 주요경비 계산명세(소득구분별·사업장별)

구 분	계(A) (= B + C + D)	정규증명서류 수취금액 (B)	주요경비지출명세서 작성금액(C)	주요경비지출명세서 작성제외금액(D)
매입비용	㉔	㉒	㉘	㉖
임 차 료	㉕	㉓	㉙	㉗
인 건 비	㉖	㉔	㉚	㉘
계(㉙ = ㉔)	㉙	㉔	㉙	㉘

첨부자료      주요경비지출명세서 1부

#### ● 정규증명서류 수취금액(B) 작성 내용

- (㉒매입비용 및 ㉓임차료)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금액
- (㉔인건비) 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퇴직소득 지급명세서에 의해 확인되는 금액
-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이 확인되고 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서명 날인한 증명서류에 의한 금액

#### ● 주요경비지출명세서 작성금액(C) 작성 내용

- (㉘매입비용 및 ㉙임차료) 매입비용 또는 임차료 중에서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외의 간이 영수증 등을 수취한 금액

#### ● 주요경비지출명세서 작성제외금액(D) 작성 내용

- ① 공급받은 재화의 거래건당 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3만원 이하
- ② 거래상대방이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간이사업자로서 신용카드 가맹점이 아닌 경우
- ③ 농어민으로부터 재화를 직접 공급받은 경우
- ④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거래
- ⑤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 재화를 공급 받은 경우
- ⑥ 비영리법인(수익사업 관련 부분 제외)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 3 사업소득자의 소득공제·세액공제·세액감면

#### ■ 사업소득자가 공제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구 분	종 류		공제금액	공제대상
인 적 공 제	기본 공제	본인공제(법50①1)	150만원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근로소득자 등 포함)
		배우자공제(법50①2)	150만원	
		부양가족공제(법50①3)	150만원	
	추가 공제	경로우대자공제(법51①1)	100만원	
		장애인공제(법51①2)	200만원	
		부녀자공제(법51①3)	50만원	
	한부모 소득공제(법51①6)	100만원		
연금보험료 공제 (법51의3)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기여금 또는 본인부담액 전액 (사용자 부담금 제외)		종합소득 있는 거주자 (근로소득자 등 포함)	
그 밖 의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 (조특법86)	Min(불입액의 40%, 72만원) * '00.12.31이전 연금저축 가입자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근로소득자 등 포함)	
	투자조합출자 등 공제 (조특법16)	Min(①, ②) ① 출자·투자분에 대해 투자금액의 10% [벤처기업에 직접투자 3천만원 이하 100%,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70%, 5천만원 초과 30%(2016~2017년 투자분은 1천5백만원 이하 100%, 1천5백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50%, 5천만원 초과 30%)] ② 종합소득금액의 50% * 조특법16조①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전문투자조합 출자의 경우 조특법132의2에 규정하는 소득공제 합계 2,500만원 한도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공제 (조특법86의3)	Min(해당연도 공제부금 납부액, 사업(근로)소득별 금액) 사업(근로)소득금액 4천만원이하 500만원, 4천만원초과~1억원이하 300만원, 1억원 초과 200만원  (19.1.1.이후 가입자는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을 사업소득에서 제외)		
	청년형 장기집합 투자증권저축 (조특법91의20)	Min(납입액의 40%, 240만원)		

■ **사업소득자가 기준경비율로 신고 시 적용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법	구 분	관련조항	공제금액
소득세법	전자계산서 발급 전송 세액공제	법56의3	발급건당 200원(100만원 한도) ① 2022.7.1. 이후 발급분부터 발급건당 200원 (100만원 한도) 세액공제 신설 ② 대상사업자 : 직전연도('21년) 사업장별 총수입 금액이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 ③ 2024.12.31.까지 적용
	외국납부 세액공제	법57	종합소득 산출세액 x [(국외원천소득-감면대상국외 원천소득x감면비율)/종합소득금액] 한도로 공제
	재해손실세액공제	법58	토지를 제외한 사업용 자산 총액의 20%이상에 해당 하는 자산 상실시 소득세액x(상실된 가액/상실전 자산 총액)
조세특례 제한법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조특법5	투자금액 x 3%

■ **사업소득자 가기준경비율로 신고 시 적용 받을 수 있는 세액감면**

종 류	관련법규	감면대상소득	감면비율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특법6	창업중소기업 소득	100%(50%)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조특법7	감면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소득	5%~30%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특법12의2	감면대상사업 발생소득	100(50)%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2022.12.31.까지)	조특법63	이전 후 발생소득	100(50)%
농공단지 입주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특법64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50%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	조특법85의6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100(50)%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조특법104의24	이전 후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	100(50)%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	조특법121의2	감면대상사업 발생소득	100(50)%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조특법121의8	감면대상사업 발생소득	100(50)%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조특법121의9	감면대상사업 발생소득	100(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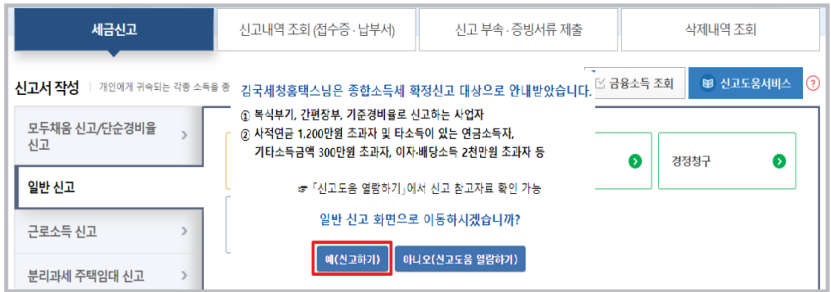
## 4 기준경비율 대상자 홈택스 전자신고 방법

### 1) 로그인

간편장부대상자의 기준경비율에 의한 종합소득세 홈택스 전자신고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각 화면별로 **[등록하기]** 버튼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내용을 입력하신 후 필히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 후 **[저장 후 다음이동]** 버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임시화면을 통해 쉽게 접속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첫 화면에서 보여지는 아이콘 중 **[종합소득세 신고]** 버튼을 클릭하시고 로그인하시면 안내된 신고유형의 맞춤형 팝업창이 뜹니다. **[예(신고하기)]**를 클릭하시면 작성할 신고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참고] 홈택스 로그인 방법 등

■ 회원가입 없이도\* 신고가 가능하나 일부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공동·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비회원 로그인(5월 신고기간에는 신용카드, 휴대전화 인증서비스 임시 제공)

<로그인 방법에 따른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자료 제공 범위>

회원가입유형			신고서 제출	신고도움 서비스	신고자료 불러오기	금융소득 자료조회	간소화 자료 불러오기	세금납부
구분	로그인	인증방식						
회원	공동인증 간편인증	X	O	O	O	O	O	O
		공동인증 간편인증	O	O	O	O	O	O
	ID/PW	휴대폰 신용카드 생체인증	O	O	O	X	O	X
		X	O	O	X	X	X	X
비회원	-	공동인증 간편인증	O	O	O	O	O	O
	-	휴대폰 신용카드	O	O	O	X	O	X

■ 홈택스 회원가입 방법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된 공동인증서·휴대폰·신용카드 중 한가지 방법을 통한 본인 인증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 회원 정보 : 아이디, 비밀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 등

● 공동·금융인증서란?

금융인증서란 금융결제원에서 개발한 클라우드 저장 기반의 인증서이며, 공동인증서는 기존 공인인증서와 같으며 명칭만 변경되었습니다.

\* 발급방법

공동·금융인증서 : 금융 기관의 인터넷 뱅킹을 신청하고 해당 금융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

● **간편인증이란?**

민간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를 이용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본인 확인 및 전자서명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발급받은 인증서가 있어야 홈택스에서 간편인증이 가능합니다.

\* 홈택스에서 이용가능 간편 인증서 종류

카카오톡, 페이코, 통신사패스, KB모바일, 삼성패스, 네이버, 신한은행, 토스, 하나은행, 농협,뱅크샐러드

● **아이디 로그인이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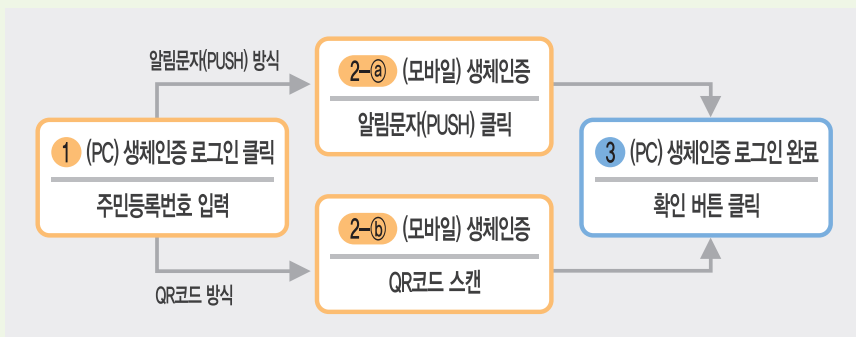
아이디와 패스워드만으로 홈택스 로그인이 가능하며 일부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있습니다.

● **생체인증이란?**

손택스(모바일 앱)에 얼굴 또는 지문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 이용가능합니다.

\* 얼굴 인증은 아이폰에서만 이용 가능

| 생체인증 로그인 절차 |



## 2) 기본사항 작성

기본사항을 작성하는 단계입니다.

**기본정보 입력** 전자신고 매뉴얼 화면도움말

▶ 왼쪽 메뉴 순서대로 입력하면 계산 오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 원활한 시스템 이용을 위하여 반드시 팝업을 허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사항** 신고서불러오기

• 개인단체 구분  개인  단체(중증)

• 귀속년도 2022

• 주민등록번호  .....  .....  **클릭!**

• 휴대전화 -선택- - - - -

• 주소지 전화 - - - - -

• 사업장 전화 - - - - -

• 장애인 여부  여  부

주소 도로명 주소 :  
지번 주소 :

• 거주구분 거주자

• 내·외국인 내국인

• 거주지국 KR 대한민국

신고유형 -선택-

• 기장의무 -선택-

신고구분 정기(확정)

분리과세 여부  여  부

**나의 소득종류 찾기** ×

• 종합과세에 합산할 소득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선택을 완료하면 적용하기를 누르세요.

선택	소득 종류	신고안내 기준
<input type="checkbox"/>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	
<input checked="" type="checkbox"/>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 (주택임대업 포함)	주택임대 소득의 경우 수입금액 2천만원 초과자는 종합과세 대상, 2천만원 이하라도 종합과세 선택가능
<input type="checkbox"/>	근로소득	복수근로 소득자 또는 소득금액 100만원 이상자
<input type="checkbox"/>	기타소득(종교인소득 포함)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초과자(비과세, 분리과세 제외)
<input type="checkbox"/>	연금소득	공적연금소득의 총연금액 연 5,166,666원(연금소득금액 100만원) 초과자 또는 사적연금소득의 총연금액 연 1,200만원 초과자
<input type="checkbox"/>	이자소득	종합과세대상 2,000만원 초과자
<input type="checkbox"/>	배당소득	

**체크!**

**사업소득 사업장 명세**

※ 동일 사업장에 업종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주업종으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임대업의 사업소득은 종합과세로 신고할 경우 선택하며, 주택임대 총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자가 분리과세로 신고할 경우에는 선택하지 않습니다.

<input type="checkbox"/>	소득종류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업종코드	수입금액
<input checked="" type="checkbox"/>	부동산임대업외의 사업소득	.....	.....	930203	52,416,239

**클릭!**

- [주민등록번호] 항목에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납세자 기본정보가 조회됩니다.
- 나의 소득종류 찾기 안내창이 뜨면 사업소득 사업장 명세 목록에 해당 사업 소득에 대한 내용이 조회되며 신고할 소득종류와 사업장을 선택합니다.
- [적용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휴대전화, 주소지전화, 사업장전화 중 하나 이상을 입력합니다.
- 기장의무 란에는 '간편장부대상자'를 선택하고, 신고유형은 아래 사업장 명세 입력 시 자동 입력됩니다.
- 소득의 종류를 선택하는 란에 신고하고자 하는 소득종류가 모두 선택되었는지 확인하고 누락된 경우 추가로 선택합니다.

사업소득 사업장명세를 입력합니다.

**사업소득 사업장 명세** 사업장 명세 추가 **선택내용 수정** 선택내용 삭제

	소득구분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업종코드	신고유형
<b>1</b>	40	*****	*****	930203	

**사업소득 기본사항 입력**

※ 선택한 사업장의 "사업소득 기본사항" 입력을 위한 문답입니다. 모든 문답내용에 대한 **답변 완료**후 "문답내용 적용하기" 버튼 클릭시 자동 등록됩니다.

사업자번호: \*\*\*\*\*  
 상호: \*\*\*\*\*      업종코드: 930203

※ 신고인내자료의 기장의무는 복식부기외무자, 신고유형은 자기조정이나 선택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답내용** 기장의무에 대한 도움말 펼치기

**1** 귀하가 선택한 사업장에 대한 기장의무를 선택하세요.  
 복식부기외무자     간편장부대상자

**2** 신고유형을 선택하세요.  
(복식부기외무자인 경우 "단순경비율"은 선택할 수 없습니다.)  
 자기조정     외부조정     실질신고확인     간편장부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3** 귀하가 선택한 사업자번호가 공동사업자도 아니고 비과세 농어가부업소득 대상 사업장도 아닙니까?  
(공동사업자:부, 비과세농어가부업소득:부)  
 예     아니오

· ※ 3번 항목: '예'를 선택한 경우 사업소득 기본사항이 자동으로 등록됩니다. '아니오'를 선택한 경우 사업소득 기본사항을 직접 수정 후 등록하세요.

**문답내용 적용하기** ← **클릭!**

- **1** 신고유형 등을 입력 ·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명세를 선택하고 우측 상단의 **[선택내용 수정]**을 선택합니다.
- 신고도움서비스에서 제공된 기장의무(3p 참고) 및 신고유형(3p 참고) 등을 묻는 팝업창이 뜹니다. 해당하는 항목을 선택하고 **[문답내용 적용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기장의무 및 신고유형이 등록됩니다.

**1** 클릭! → 사업장 명세 추가

**2** 있음

업종코드 찾기

사업자등록 없이 입력 가능한 업종 조회

**3** 업태

기장의무 -선택- 신고유형 -선택-

주소

소재지

공통사업자 여부

등록하기

클릭!

- 사업장명세를 추가하려는 경우 사업소득 사업장 명세 우측에 [사업장 명세 추가] 버튼을 클릭하면 아래로 사업장명세 입력화면이 보입니다.
- 2 사업자번호가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있음”으로 선택하고 사업자번호를 입력 후 조회를 누릅니다. 업종코드를 모르는 경우 [업종코드 찾기] 버튼을 클릭하여 해당 업종을 선택 입력합니다.

업종코드

※ 업종코드를 직접 입력하거나 업태, 세세분류의 주요키워드를 입력하시고 조회하기를 클릭하세요.

귀속연도 2022 업종코드

업태명 세세분류명

조회하기

업종코드목록 (해당 업종을 더불 클릭하여 선택하세요) 조회건수 10 건 확인

귀속연도	업종코드	업태명	세세분류명	선택
2022	011000	농업, 임업 및 어업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	선택
2022	011001	농업, 임업 및 어업	채소작물 재배업	선택
2022	011002	농업, 임업 및 어업	화훼작물 재배업	선택
2022	011003	농업, 임업 및 어업	종자 및 목축 생산업	선택
2022	011004	농업, 임업 및 어업	과실작물 재배업	선택
2022	011005	농업, 임업 및 어업	유류 및 기타 작물	선택

닫기

- 사업자번호가 없는 인적용역 사업자 등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없음”을 선택하고 사업자등록 없이 입력 가능한 업종 조회 클릭하여 해당 업종코드를 확인한 후 직접 입력합니다.

· 사업자등록번호 없이 등록 가능한 업종코드 안내

업종코드	업태 · 종목	비고
701101	주거용건물임대업(고가주택)	주택임대업의 사업소득
701102	주거용건물임대업(일반주택, 아파트포함 등)	
701103	주거용건물임대업(장기임대 공동주택)	
701104	주거용건물임대업(장기임대 다가구주택)	
701301	주거용건물임대업(주택의 전대·전전대)	
522090	소매업(담배)	
522081	소매업(가정용품 소매업)	
522082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복권 발행 및 판매업)	
523984	소매업(우표)	
523985	소매업(인지)	
525101	전자상거래업	
525103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525104	SNS마켓	

- ③ 기장의무 란에는 “간편장부대상자”를 선택하고, 신고유형 란에는 “기준 경비율”을 선택합니다.
-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사업소득 사업장 명세에 입력한 내용이 수록됩니다.
- 사업소득 사업장 명세에는 다수의 사업장을 입력할 수 있으며 목록에서 수정하거나 삭제할 내용이 있는 경우 해당 사업장을 체크하고 [선택내용 수정 또는 삭제] 버튼을 클릭하여 수정 또는 삭제합니다.
- 입력한 내용을 확인하고 [저장 후 다음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 3) 소득금액명세서

소득금액을 작성하는 단계입니다.

● 문답내용

1 귀하가 선택한 사업장에 대해 신고도움서비스에 제공된 총 수입금액은 52,416,239원 입니다. 해당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시겠습니까?  
 예  아니요

2 귀하가 선택한 사업장은 본인 소유입니까?  
 (예 인 경우 '자가용', 아니로인 경우 '일반용'이 선택됩니다.)  
 예  아니요

문답내용 적용하기 ← **클릭!**

- 사업장의 총수입금액을 묻는 팝업창이 뜹니다.
- 수입금액이 일치하는 경우 “예”를 누르고 [문답내용 적용하기]를 누르면 소득금액계산 명세의 업종코드 및 총수입금액, 소득금액이 자동 입력되어집니다.

● 기준경비율 동영상(주계소득금액 계산서) 화면도움말

● 주계소득금액 계산서(기준경비율)

● 소득금액계산(639-22-01207, 930203)(업종별)

· 1개의 사업장에 업종이 2개 이상인 경우 : 먼저 주업종코드 및 총수입금액 등을 입력후 「아래 표에 등록하기」 버튼 클릭하고, 부업종 코드 및 총수입금액 등을 입력 합니다. (「아래 표에 등록하기」 버튼 아래에 동일한 사업자번호로 입력한 2건이 조회됨)

사업자등록번호	.....	상호	.....	소득구분	40
업종코드	930203 <input type="button" value="조회"/>	업태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종목	두발 미용업
기장의무(※ 기준경비율 및 비교소득금액 계산시 적용됩니다.)				간편장부대상자 <input type="button" value="▼"/>	
9. 총수입금액				52,416,239	
경비를 적용기준				<input checked="" type="radio"/> 일반용 <input type="radio"/> 자가용	
14. 기준경비율				일반용 19.3 %	자가용 19.7 %
15.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경비				10,116,334	
18. 단순경비율(%)				일반용 82.4 %	자가용 82.1 %
19.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금액(9*(1-18))	세법도우미			9,225,258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배율	세법도우미			<input type="radio"/> 3.4 <input checked="" type="radio"/> 2.8	
20. 비교소득금액(19*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배율)				25,830,722	

● 업종별 총수입금액 선택내용 수정 선택내용 삭제

<input type="checkbox"/>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소득구분코드	업종코드	총수입금액
조회된 내역이 없습니다.					

- 소득금액계산을 수정하여야 하는 경우 화면 중간에 위치한 업종별 총수입금액 란의 해당 사업장을 선택하고, 우측의 선택내용 수정을 클릭하면 됩니다.

- 기준경비율에 의해 계산된 경비와 단순경비율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이 자동 계산되어 입력됩니다.
- 입력된 금액을 확인 후 [아래표에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사업장 정보 및 업종별 총수입금액 항목에 입력한 내용이 추가됩니다.

○ **합계(소득구분별-사업장별)**

· 당기에 지출한 주요경비가 있는 경우에만 입력하며, 입력한 경우에는 반드시 아래의 「등록하기」를 클릭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사업자등록번호	*****	상호	*****	소득구분	40
9. 총수입금액					52,416,239
10.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					0
11. 당기에 지출한 주요경비(34.합계 금액과 일치)					1,250,000
12.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					0
13. 계(10+11-12)					1,250,000
15.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경비					10,116,334
16. 필요경비 계(13+15)					11,366,334
17. 기준소득금액(9-16)					41,049,905
19.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금액					9,225,258
20. 비교소득금액					25,830,722
21. 소득금액(17 또는 20 중 적은 금액)					25,830,722

※ 정규증빙제출내역(세금계산서, 계산서, 일용근로-근로-퇴직소득지급명세서) 자료를 조회 하시려면 선택하여 클릭하세요. **1**  
 다만, 안내자료상 상실신고확인대상자와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6억원이상의 경우 (세금)계산서 등 조회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 **주요경비 계산명세(소득구분별-사업장별)**      작성요령      전자(세금)계산서      전자 외(세금)계산서      지급명세서

구분	계(A) (=B+C+D)		정규증빙서류 수위금액(B) <b>2</b>	주요경비지출명세서 작성금액(C) 작성하기	주요경비지출명세서 작성제외금액(D)
매입비용	22	1,100,000	23 1,000,000	24 100,000	25 0
임차료	26	100,000	27 100,000	28 0	29 0
인건비	30	50,000	31 0	32	33 50,000
합계	34	1,250,000	35 1,100,000	36 100,000	37 50,000

**등록하기**

- 화면 하단에 소득구분별, 사업장별로 주요경비 계산명세를 작성하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 **1**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경우, 정규증빙제출내역(세금계산서, 계산서, 지급명세서)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전자외세금계산서, 지급명세서 순으로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합니다.

- 자세한 입력방법은 **[작성요령]** 버튼을 클릭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 주요 경비 계산명세서에서 정규증빙서류 수취금액을 직접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 수입금액에서 공제할 매입비용 또는 임차료 중에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수령하지 않은 금액은 주요경비 지출 명세서를 반드시 작성합니다.
- ② 주요경비 지출명세서 작성금액 란에 지출금액을 입력 후 **[작성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주요경비 지출명세서를 입력합니다.

- 이 외(6p 참조)에 거래건당 3만원 이하의 금액 등 주요경비 지출명세서 작성 대상이 아닌 경비는 주요경비 지출명세서 작성제외금액 란에 입력합니다.
- 입력 후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상단의 11번 항목 **[당기에 지출한 주요경비]** 금액에 자동으로 반영되어 소득금액이 자동계산됩니다.
- 사업장이 2개 이상인 경우 상단의 사업장 목록에서 선택 후 우측의 **[선택내용 입력/수정]**을 클릭하고 같은 방법으로 입력합니다.

사업소득명세서 및 원천징수세액 입력 화면입니다.

- ①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액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하여 해당 내역을 선택하고 [적용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 사업소득 중복여부를 확인 후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② 직접 내용을 입력하려는 경우 상단 우측의 [추가 입력] 버튼을 클릭하면 입력할 수 있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 사업자번호 및 원천징수세액을 입력하고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아래에 해당 내용이 입력됩니다.

근로·연금·기타소득을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 첫 화면 나의 소득종류 중 근로·연금·기타소득을 선택한 경우, 근로소득 등 지급명세서 불러오기 팝업창이 뜹니다.

근로,연금,기타소득 불러오기

• 근로소득

※ 2개 이상의 근무처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한 경우 종전 근무지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이 중복하여 적용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택	구분	근무지 사업자번호	상호	총급여액	결정세액
<input checked="" type="checkbox"/>	주(현)	*****	*****	688,880	0

← **클릭!**

<input type="checkbox"/>	소득구분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총수입금액 (총급여액·총연금액)	소득세 (결정세액)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근로소득	*****	*****	688,880	0

-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있는 경우 합산 신고하고자 하는 지급명세서를 선택하고 [선택완료] 버튼을 누릅니다.
- [적용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내용이 근로·기타(종교인)·연금소득 명세서에 관련 내용이 입력됩니다.
- 근로·연금·기타소득이 있으나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보이지 않는 경우 [달기] 버튼을 누릅니다.

• 근로·기타(종교인)·연금소득 명세서

<input type="checkbox"/>	소득구분	소득의 지급자		③ 총수입금액 (총급여액·총연금액)	⑥ 필요경비 (근로소득공제· 연금소득공제)	소득금액 (⑤ - ⑥)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상호 (성명)			
<input checked="" type="checkbox"/>	51	*****	*****	20,000,000	8,250,000	11,750,000

• 근로/연금/기타(종교인) 소득 입력

※ 종교인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소득구분> 코드는 58,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소득구분> 코드는 67입니다.

• 소득구분: 원천징수의무 있는 국내 근로소득 51

소득의 지급자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	<input type="button" value="확인"/>	상호(성명)	금천세무서
• ③ 총수입금액 (총급여액·총연금액)		20000000		⑥ 필요경비 (근로소득공제·연금소득공제)	8,250,000
소득금액(⑤ - ⑥)		11,750,000		<input type="button" value="도움말"/>	
원천징수 소득세 (지방소득세는 제외)		100,000		원천징수 능여존특별세	0

- 직접입력을 원하는 경우 근로·기타(종교인)·연금소득 명세서 화면 상단 우측의 **[추가입력]** 버튼을 누르면 하단에 소득을 입력할 수 있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 소득구분 및 소득지급자, 총수입금액 등을 직접 입력하고, **[등록하기]** 버튼을 누르면 해당 내용이 명세서에 입력됩니다.
- 입력된 소득명세서 내용 중 수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명세서를 선택하고 **[선택내용 수정]** 버튼을 클릭하면 하단으로 관련 내용이 보여지며, 수정할 내용을 직접 수정한 후 **[등록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 입력한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고 **[저장후 다음이동]**을 누릅니다.

#### 4)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

- 기준경비율 신고자는 이월결손금 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팝업창이 뜨면 확인을 누릅니다.

▶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 · 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 동영상(결손금 명세서)

※ 본 화면에서부터 **마지막(세액계산) 화면까지** 모든 화면을 차례로 경유해서 「**저장 후 다음이동**」버튼을 눌러 자료를 저장해야 산출세액 등 세액계산이 정상적으로 반영됩니다.

※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신고서 작성 중 다시 본 화면으로 돌아와 「**저장 후 다음이동**」버튼을 누르면 <종합소득금액> 및 <산출세액>이 기본세율을 적용받아 재계산되므로, 본 화면에서부터 마지막 [세액계산]화면까지 차례로 경유해서 「**저장 후 다음이동**」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 결손금 · 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 도움말

구분		
이자소득금액		111,985,457
배당소득금액		22,200,000
중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금액	0	0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금액 (주택임대업제외)	0	0
부동산임대업		

**ver-teht.hometax.go.kr에 포함된 페이지의 메시지**

신고유형이 기준·단순경비율, 분리과세, 비사업자인 경우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를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결손금을 입력하지 않고 이동하시려는 경우 '확인'을 누르시고, 입력하시려면 '취소'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취소

5.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 후 소득금액 (1-2-3-4)

## 5) 소득공제명세서

소득공제를 입력하는 단계입니다.

- 근로소득 및 연금소득 등의 지급명세서가 있는 경우 지급명세서 상의 공제내역 불러오기 팝업창이 뜹니다.(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해당 없음)

근로소득 불러오기

※ 아래 화면의 정보는 자료제공처에서 제공한 내용으로 누락자료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본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제 소득내용 대로 정실하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제선택	구분	근무지 사업자번호	상호	총급여액	결정세액
<input checked="" type="checkbox"/>	주(원)	*****	*****	688,880	0

위 내용대로 적용하기    직접 입력하기

- 연말정산한 근무처 또는 연말정산 하지 않은 경우는 주된 근무처의 지급명세서 1개를 선택하고 [적용하기]를 누릅니다.
- 해당 지급명세서에 있는 내용이 소득공제 명세서 내역에 입력되어 보여 집니다.

소득공제 내역 중 인적 공제자 명세를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3

소득공제명세서    동영상(소득공제명세서)    화면도움말

소득공제(소득세법)    근로소득(연말정산) 불러오기    종교인소득(연말정산) 불러오기    사업소득(연말정산) 불러오기    도움말

> 인적공제대상자 명세

※ 인적공제대상자 명세는 보고서 출력시 최대 8개까지만 표시됩니다.

전년도 인적공제 불러오기    추가 입력    선택내용 수정    선택내용 삭제

<input type="checkbox"/>	NO	주민등록번호	성명	관계	기본공제	70세이상	장애인	부녀자	현
<input type="checkbox"/>	1	*****	****	↑	Y	N	N	N	

클릭!

- 인적공제대상자 명세서에서 입력된 목록을 확인합니다.
- 우측의 [전년도 인적공제 불러오기]를 클릭하여 직전연도에 공제받은 인적공제 내역을 불러와 채울 수 있습니다.
- 추가로 인적공제를 받고자하는 가족이 있는 경우 인적공제대상자 명세서의 우측 [추가 입력] 버튼을 누르시면 위쪽으로 입력할 수 있는 인적공제 등록란이 보여집니다.

**문답내용**

1.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입니까?)  
(예 인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 이나로 인 경우 기본공제 비대상자가 선택됩니다.)  
 예  아니요

2. 부양가족이 장애인입니까?  
 예  아니요

**소득공제(소득세법)**

1. 적공제 등록

주민등록번호  -  **확인** 성명  내국인  내국인

기본공제  해당자  미해당자 **관계**

인적공제항목  70세 이상  부녀자  한부모가족  장애인

※ 2016년귀속 부되는 부양가족 중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당해 화면에서 <기본공제>에 미해당자로 체크하여 등록하면 [기부금 및 조정명세서] 화면에서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클릭!**

**인적공제대상자 명세**

※ 인적공제대상자 명세는 보고서 출력시 최대 8개까지만 표시됩니다.

<input type="checkbox"/>	NO	주민등록번호	성명	관계	기본공제	70세이상	장애인	부녀자	현
<input type="checkbox"/>	1	*****	****	소속자 본인	Y	N	N	N	

- ① 주민등록번호에 추가할 인적공제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 ② 관계를 선택하면 문답형 팝업창이 뜨고, 예/아니오를 선택하면 기본공제 및 인적공제항목에 선택내용이 표기되며, 추가로 선택할 인적공제항목은 직접 선택합니다.
- **[등록하기]**를 클릭하면 인적공제대상자 명세 목록에 추가 됩니다.

- 아래로 이동하면 소득세법상 기타공제 및 특별공제 항목이 나타나며, ③ 근로소득(연말정산) 불러오기 한 경우 관련 내용이 채워져 보여집니다.
- 사업소득 근로소득 등 소득종류별 공제항목이 다르며 공제할 수 없는 경우 입력 불가합니다. 우측에 소득공제 한도액이 표시되어 있으니 소득공제 한도액을 초과하여 입력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공제 및 특별공제

구분	금액	소득공제 한도액
11. 국민연금보험료 <input type="text" value="도용말"/>	3,000,000	34,580,722
12. 기타연금보험료 <input type="text" value="도용말"/>	0	
13.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 <input type="text" value="도용말"/>	0	2,000,000
14. 특별공제_보험료 <input type="text" value="연말정산 간소화 불러오기"/>	0	11,750,000
15. 특별공제_주택자금 <input type="text" value="연말정산 간소화 불러오기"/>	0	18,000,000
16. 특별공제_기부금(이월분)	0	37,580,722
17. 특별공제 계(14+ ~ +16)	0	

-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불러와 입력하고자 하는 경우 **[연말정산간소화 불러오기]** 버튼을 누릅니다.

보험료(건강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공제 계산기

**클릭!**  
도움말 열리기

\* 귀속년도 2022  선택해제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불러오기**

(단위: 원)

구분	지출금액
① 건강보험료 등 납입금액	0
② 고용보험료 납입금액 (직접 입력)	100,000
③ 소계(① + ②)	100,000
공제대상금액	100,000
소득공제액	100,000

**1 클릭!** →    **2 클릭!**

- 팝업창이 뜨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불러올 해당 월을 선택하고 **[불러오기]**를 클릭하거나 지출금액을 직접 입력 및 수정합니다.
- **[계산하기]**를 눌러 공제액을 확인하고 이상 없는 경우 **[적용하기]** 버튼을 눌러 입력합니다.

화면하단에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명세서를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 소득종류별 공제항목이 다르며 공제할 수 없는 경우 입력 불가합니다.

①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구분	금액	소득공제 한도액
18. 개인연금저축(2000.12.31. 이전 가입)	0	720,000
19.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0	5,000,000
20. 주택마련저축 <input type="button" value="도움말"/> <input type="button" value="계산하기"/>	200,000	2,640,000
21.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출자 등 <input type="button" value="도움말"/> <input type="button" value="계산하기"/>	0	18,790,361
22.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액 <input type="button" value="연말정산 간소화 불러오기"/>	0	
23. 우리사주조합 출자금 <input type="button" value="도움말"/>	0	15,000,000
24.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0	11,274,216
25. 고용유지중소기업의 근로자 <input type="button" value="도움말"/>	0	10,000,000
26.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input type="button" value="도움말"/>	0	2,400,000
27. 정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0	6,000,000

- 우측에 소득공제 한도액이 표시되어 있으니 금액 입력 시 소득공제 한도액을 초과하여 입력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7p 참고)
- 각 항목별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금액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액은 **[연말정산간소화 불러오기]** 버튼을 이용하여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근로소득자만 해당)

신용카드 공제 계산기

도움말 펼치기

상단의 1번부터 4번까지는 근로기간 동안의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 직계존비속등의 사용금액을 입력해주시기 아래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전통시장+대중교통+현금영수증+적불선불카드+신용카드+도시·공민·박물관·미술관 사용분

• 귀속년도 2022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input type="checkbox"/>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자료제: 동의여!	합계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 합계	대중교통 상반기	대중교통 하반기	도서문화공
<input checked="" type="checkbox"/>	***	*****	소득자 본인	Y	0	0	0	0	0	0	0	0
<input checked="" type="checkbox"/>	***	*****	형제자매	N	0	0	0	0	0	0	0	0

금액

총 금액액 20,000,000

신용카드 등 사용액 합계 10,000,000

① 전통시장 사용액 0

- **[연말정산간소화 불러오기]** 버튼을 누른 후 불러오고자 하는 월을 선택하고 **[불러오기]**를 클릭합니다.
- 입력내용을 확인하고 **[계산하기]**를 눌러 소득공제액을 확인 후 수정사항이 없으면 **[적용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저장 후 다음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 6) 기부금 및 조정명세서

- 사업소득을 기준경비율로 신고하는 경우 필요경비 인정 및 세액공제 불가하며 근로·연금·기타 연말정산 사업소득(방문판매, 보험모집, 보험설계)이 있는 경우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기부금 명세서
동영상(기부금 명세서)   화면도움말   도움말

※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서 제출한 근로소득본의 기부금명세서를 불러오기 하려면 "기부금(당해 및 이월)내역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하세요. (이전 단계에서 근로소득 불러오기를 했어도 기부금명세서는 별도의 서식으로써 자동 조회되지 않습니다.)  
 ※ 연말정산시 반영하지 않은 기부금은 조회되지 않으므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확인 후 추가입력 해야 합니다.

기부금 입력대상
선택내용 입력/수정

※ 해당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장을 선택하고, "선택내용 입력/수정" 버튼을 클릭후 기부금 명세를 입력하세요.

<input type="checkbox"/>	공제구분	ver-teh.hometax.go.kr에 포함된 페이지의 메시지	고유형	주업종코드
<input type="checkbox"/>	세액(소득) 필	기부금 내역이 없는 경우 기부금 명세서를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입력하지 않고 다음 화면으로 이동하시려면 "확인"을 누르시고, 입력하시려면 "취소"를 누르시기 바랍니다.		

※ 기부금 영수증 등을 확인하시겠습니까?

주민등록번호

유형코드: -전제-

기부내용

확인
취소

- 기부금 명세를 입력하지 않고 다음화면으로 이동하기 위해 확인을 누릅니다.
- 기부금 내역을 입력하고자 하는 경우 취소를 누르면,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한 기부금 명세서가 있는 경우 "기부금명세서 불러오기" 팝업창이 뜹니다.

기부금명세서 불러오기

기부금명세서란?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서 제출한 근로소득본의 기부금명세서를 조회 하는 화면입니다.  
 회사에서 등록 제출하거나 누락 제출 또는 제출 이후 변동분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해연도 기부내역] 및 [이월분 기부내역]에서 입력할 내용을 선택해 주세요

당해연도 기부내역

주인등록번호	거부자		거부처		기부내역				
	성명	관계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기부유형	건수	기부금액	공제대상금액	기부장래금
<input type="checkbox"/>	*****	*****	거주자(본인)		법정기부금	1	5,720	5,720	0
<input type="checkbox"/>	*****	*****	거주자(본인)	*****	종교단체외지정기	1	240,000	240,000	0
<input type="checkbox"/>	*****	*****	직계비속	*****	법정기부금	1	5,000	5,000	0
<input type="checkbox"/>	*****	*****	거주자(본인)		종교단체외지정기	1	12,000	12,000	0

이월분 기부내역

기부년도	기부유형	기부금액	전년까지 공제잔액	공제대상금액	해당연도 공제금액	해당연도 공제받지못한금액	
						소멸금액	이월금액
<input type="checkbox"/>							

조회된 내역이 없습니다.

의 내용대로 적용하기
작성 입력하기

- 당해연도 기부내역 목록과 이월분 기부내역 목록에서 해당 기부금을 선택하고 [적용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코드	기부 내용	기부자			기부처			간수	합계금액
		주민등록번호	성명	관계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간수		
10		*****	****	1			1	1,000,000	

※ 당해연도만 조회되며 이월분은 기부금 유형별 합계에서 조회되며, 세액공제로 입력한 자료는 전체가 조회되며 필요경비는 사업장별로 조회됩니다.

기부금 코드	당해연도							이월분
	기부자 구분							
	합계	본인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그 외	
총 계	1,000,000	1,000,000	0	0	0	0	0	0
10	1,000,000	1,000,000	0	0	0	0	0	0

- ① 팝업창을 선택하지 못하고 닫으셨다면 화면 중간에 [기부금(당해 및 이월)내역 조회하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 제출된 기부금 명세서가 없는 경우 해당 버튼은 비활성화상태입니다.

기부금 연말정산 간소화 불러오기

· 당해연도 기부내역

기부자	기부처		기부내역							
	주민등록번호	성명	관계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기부유형	간수	기부금액	공제대상금액	기부장려금
*****	****	소득자 본인	*****	*****	종교단체외지정기...		1	240,000	240,000	0

- ②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가 있는 경우 [기부금(연말정산 간소화)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공제받고자 하는 기부내역을 선택하고 [적용하기]를 클릭합니다.
- 기부금을 직접 입력하고자 하는 경우 기부금 입력대상 항목에서 공제대상 및 공제구분을 선택하고 [선택내용 입력/수정] 버튼을 클릭합니다.

기부금 입력대상

※ 해당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장을 선택하고, "선택내용 입력/수정" 버튼을 클릭후 기부금 명세를 입력하세요.

공제구분	주인(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소득구분	신고유형	주업종코드
<input checked="" type="checkbox"/>		*****	김***		

※ 기부금 영수증 등을 확인하셔서 기부내역 건수 및 기부금액 등의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번호 ..... 성명 .....

• 유형코드 소독세법 제34조제2항제1호

기부내용

• 기부자 주민등록번호 ..... 기부자 성명 한\*\*\* 기부자 관계 거주자(본인)

기부처 사업자등록번호 ...-...-... 확인 기부처 상호 금전세무서

• 기부내역 건수 1 기부내역 합계금액 1,000,000

• 공제대상 기부금액 1,000,000 기부장려금 신청금액 0

기타 기부금 0

**등록하기** ← **클릭!**

기부금(연말정산 간소화) 조회하기 기부금(당해 및 이월)내역 조회하기 **선택내용 수정** **선택내용 삭제**

□ 코드	기부 내용	기부자			기부처			합계금액
		주민등록번호	성명	관계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건수	
<input checked="" type="checkbox"/> 10		.....	.....	1	.....	.....	1	1,000,000

※ 당해연도만 조회되며 이월분은 기부금 유형별 합계에서 조회되며, 세액공제로 입력한 자료는 전체가 조회되며 필요경비는 사업장별로 조회됩니다.

- 유형코드에 기부금영수증에 기재된 기부내용 코드를 선택한 후 기부내용, 기부자, 기부처 사업자등록번호, 건수, 기부금액 등 해당사항을 입력한 후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아래 기부금 명세에 기부내용이 추가되며, 명세를 선택한 후 **[선택내용 수정 또는 삭제]** 버튼을 클릭하면 수정/삭제도 가능합니다.
- 기부금 명세서 작성 중에 입력한 기부금을 이월하고자 할 경우 **[기부금 조정명세서]** 버튼을 클릭하고 팝업창이 뜨면 수정하고자 하는 기부내역을 선택한 후 **[선택내용 수정]** 버튼을 클릭합니다.
  - \* 올해 결정세액이 없어 올해 지출한 기부금을 올해 공제 받지 않을 경우 올해 지출한 기부금을 내년 이후로 이월하여 세액공제 받을 수 있음

기부금조정명세서

주민등록번호 ..... 성명 .....

도움말 펼치기

· 기부금 조정명세서 내역

· 기부유형	소득세법 제34조제2	· 기부연도	2022
13. 기부금 합계금액	1,000,000	· 14. 공제대상 기부금액	1,000,000
15. 기부장려금 신청금액	0	16. 기타 기부금	0
· 17. 전년까지 공제된 금액	0		
18. 공제대상금액(14-17)	1,000,000	· 해당연도 필요경비	0
· 해당연도 소득공제	500,000	· 해당연도 세액공제 대상금액	500,000
· 해당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소멸금액	500,000	· 해당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이월금액	500,000

등록하기 취소하기

선택내용 수정 선택내용 삭제

□	NO	기부금 코드	기부 연도	14. 기부금액	17. 전년까지 공제된 금액	18. 공제대상금액 (14-17)	해당연도			해당연도에 공제받지않는 금액	
							필요경비	소득공제	세액공제 대상금액	소멸금액	이월금액
<input checked="" type="checkbox"/>	1	10	2022	1,000,000	0	1,000,000	0	0	500,000	0	500,000

- 기부금 조정명세서 내역에 기부내역이 입력되며, 18.공제대상금액 중 금년에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① 해당연도 세액공제 대상금액에 입력하면 차액만큼 ② 해당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이월금액에 자동 계산 입력됩니다.
- 입력내용을 확인하고 팝업창 맨하단 [입력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 입력이 완료되면 [저장 후 다음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 7) 세액공제·감면·준비금

세액감면(면제)신청서 내역을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세액감면(면제) 신청서

동영상(세액감면 신청서) (단위: 원)

금액: 2,989,608

종합소득금액: 2,989,608

사업장 정보

※ 사업장을 1건씩 선택 후 [선택내용 입력/수정] 버튼을 클릭하여 내용을 입력 후 하단의 [등록하기]를 클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택내용 입력/수정 | 선택내용 삭제

소득구분: 40 (소득금액: 25,830,722)

세액감면(면제) 신청서

ver-teht.hometax.go.kr에 포함된 페이지의 메시지

세액감면 대상이 아닌 경우 세액감면(면제) 신청서를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면세액을 입력하지 않고 다음화면으로 이동하시려는 경우 "확인"을 누르시고, 입력하시려면 "취소"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 취소

- 세액감면 대상이 아닌 경우(8p 참고) “세액감면(면제)신청서를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라고 팝업창이 뜨면 [확인]을 누릅니다.
- 감면세액을 입력하고자 하는 경우 [취소]를 누릅니다.
- 사업자별 세액감면 가능한 항목이 입력 가능한 상태로 나타나며, 세액감면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세액감면율, 대상세액, 감면세액을 항목별로 입력하고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세액감면(면제) 신청서

동영상(세액감면 신청서) (단위: 원)

금액: 37,580,722 (종합소득금액) | 산출세액: 2,989,608

사업장 정보

※ 사업장을 1건씩 선택 후 [선택내용 입력/수정]를 클릭하여 내용을 입력 후 하단의 [등록하기]를 클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택내용 입력/수정 | 선택내용 삭제

소득구분	신고유형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소득금액
<input checked="" type="checkbox"/>	40	31	*****	25,830,722

세액감면(면제) 신청서 (단위: 원)

※ 대상세액란에는 최저한세 적용 전의 감면세액을 기재하며  
감면세액란에는 대상세액에서 최저한세액 적용에 따른 감면 배제세액을 뺀 금액을 기재합니다.

구분	세액감면율	대상세액	감면세액	한도충족감면세액
<input type="checkbox"/> (100)중소기업에대한특별세액감면	0	0	0	0
<input type="checkbox"/> (101)장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	0	0	0	0
<input type="checkbox"/> (102)장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0	0	0	0
<input type="checkbox"/> (104)에너지신기술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0	0	0	0
<input type="checkbox"/> (105)고용창출형창업기업세액감면	0	0	0	0
<input type="checkbox"/> (106)사업전환중소기업세액감면	0	0	0	0
<input type="checkbox"/> (108)지방이전중소기업공장세액감면	0	0	0	0
<input type="checkbox"/> (110)농공단지입주기업세액감면	0	0	0	0
<input type="checkbox"/> (114)사회적기업세액감면	0	0	0	0

- 입력내용 확인 후 [저장 후 다음이동]을 클릭합니다.

세액공제신청서 내역을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The screenshot shows the '세액공제 신청서' (Tax Credit Application Form) interface. A pop-up message box is displayed in the center, containing the text: 'ver-teht.hometax.go.kr에 포함된 페이지의 메시지' (Message from the page included in ver-teht.hometax.go.kr). Below this, it states: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경우 세액공제신청서를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세액공제를 입력하지 않고 다음화면으로 이동하시려는 경우 "확인"을 누르시고, 입력하시려면 "취소"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If you are not eligible for tax credit, you do not need to enter the application. If you want to move to the next screen without entering tax credit, click '확인' (Confirm). If you want to enter it, click '취소' (Cancel).) At the bottom of the pop-up are two buttons: '확인' (Confirm) and '취소' (Cancel). The background form shows fields for '금액' (Amount) with '총합소득금액' (Total Income) at 2,989,608 and '소득금액' (Income) at 25,830,722. There are also buttons for '선택내용 삭제' (Delete Selected Content) and '선택내용 입력/수정' (Enter/Modify Selected Content).

-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경우 “세액공제신청서를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팝업창이 뜨면 [확인]을 누릅니다.
- 세액공제를 입력하고자 하는 경우 [취소]를 누릅니다.
- 사업자별 세액공제 가능한 항목이 입력 가능한 상태로 나타나며, 세액공제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공제율, 대상세액, 공제세액을 항목별로 입력하고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8p 참고)

The screenshot shows the '세액공제 신청서' (Tax Credit Application Form) interface, specifically the '세액공제 신청서(639-22-01207)' section. The form is divided into several sections: '금액' (Amount) showing '총합소득금액' (Total Income) at 37,580,722 and '산출세액' (Tax Payable) at 2,989,608; '사업장 정보' (Business Information) with a table for '일련번호' (Serial Number), '소득구분' (Income Category), '신고유형' (Reporting Type), '사업자등록번호' (Business Registration Number), '상호' (Trade Name), and '소득금액' (Income); and '세액공제 신청서(639-22-01207)' (Tax Credit Application Form) with a table for '구분' (Category), '공제율' (Credit Rate), '대상세액' (Target Tax Amount), and '공제세액' (Credit Tax Amount). The table lists various categories such as '중소기업 통합 승계공제' (Small Business Consolidated Succession Credit), '법인전환 승계공제' (Corporate Conversion Succession Credit),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 (Tax Credit for Investment in Facilities for New Growth Technology Business Commercialization), etc.

구분	공제율	대상세액	공제세액
중소기업 통합 승계공제	0	0	0
법인전환 승계공제	0	0	0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	0	0	0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0	0	0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세액공제(최저한세적용대상)	0	0	0
일반연구및인력개발비세액공제(최저한세적용대상)	0	0	0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세액공제(최저한세적용제외)	0	0	0
일반연구및인력개발비세액공제(최저한세적용제외)	0	0	0
고용중대시킨기업에대한세액공제	0	0	0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0	0	0

- 입력내용 확인 후 [저장 후 다음이동]을 클릭합니다.

세액감면, 공제, 준비금 명세서 내역을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 세액감면 및 공제 항목 중 근로소득자인 경우에만 공제 가능한 항목이 있으며 공제 대상이 아닌 경우 입력 불가하고 도움말 등을 참고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세액감면·공제 준비금 명세서 동영상(세액감면-공제 준비금)

○ 세액감면(면제) 명세서 도움말 (단위:원)

구분	금액	사업자등록번호
외국인 투자에 대한 세액감면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조세조약(원어민교사)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input type="text"/>	
외국인 기술자 세액감면	<input type="text"/>	
장부간 협약에 의한 외국인 급여에 대한 세액감면	<input type="text"/>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액감면	<input type="text"/>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세액감면	<input type="text"/>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input type="text"/>	
합계	0	

- 지급명세서를 불러오기한 경우 해당 공제내역이 입력되어 있습니다.
- 금액 수정이 필요하거나 추가 입력해야 할 경우 수정 입력합니다.

소득세법상 인별 세액공제 명세서를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 세액공제명세서 (단위:원)

> 『소득세법』상 세액공제

> 특별세액공제와 표준세액공제 중 큰 금액만 공제되며, 입력한 특별세액공제가 작아도 화면에 남아 있습니다.

구분	공제대상금액	적용률	세액공제	사업자등록번호
자녀세액기본공제 <span style="border: 1px solid red; padding: 2px;">도움말</span>	0 명		0	
출산·입양 자녀세액공제 <span style="border: 1px solid red; padding: 2px;">도움말</span>	<input type="checkbox"/> 첫째 <input type="checkbox"/> 둘째 <input checked="" type="checkbox"/> 셋째이상 <span style="border: 1px solid gray; padding: 2px;">0</span> 명		0	
연금계좌세액공제 연말정산 간소화 불러오기	500,000		75,000	
과학기술인공제	0		0	
퇴직연금	0		0	
연금지속	500,000		75,000	
ISA만기 시 연금 계좌납입액	0		0	
일반 보장성 보험료	<input type="text"/>			

- 자녀세액공제는 소득공제 명세에서 입력한 부양가족을 토대로 자동 입력됩니다.
- 기부금세액공제는 기부금 및 조정명세서 화면에서 입력한 내용을 토대로 자동 입력되어 있습니다.

- 연금계좌세액공제, 일반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액을 수정하거나 지급명세서 공제내역 대신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입력하고자 하는 경우 [연말정산간소화 불러오기] 버튼을 눌러 해당항목을 입력합니다.

\*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공제 불가

연금계좌세액공제 계산기

도움말 펼치기

(단위:원) 불러오기

항목	구분	지출금액
① 과학기술인공제		0
② 퇴직연금		0
③ 연금저축	<input checked="" type="checkbox"/> 50세 이상	5,000,000
④ 소계 (① + ② + ③)		5,000,000
공제대상금액		5,000,000
세액공제액		750,000

항목	지출금액
ISA계좌 만기 시 퇴직연금 계좌 전환액(만기 후 60일 이내 납입분)	0
ISA계좌 만기 시 연금저축 계좌 전환액(만기 후 60일 이내 납입분)	0
ISA계좌 관련 공제대상금액	0
ISA계좌 관련 세액공제액	0

1 클릭! → 계산하기 적용하기 → 2 클릭!

-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공제세액을 확인하고 [적용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합니다.

보험료 공제 계산기

클릭!

\* 귀속년도 2022 전채선택 선택해제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불러오기

성명(계약자) 주민등록번호 관계

납입금액

일반보장성 보험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

(단위:원)

구분	납입금액
① 일반 보장성보험	1,000,000
②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	0
③ 소계 (① + ②)	1,000,000
공제대상금액	1,000,000
세액공제액	120,000

1 클릭! → 계산하기 적용하기 → 2 클릭!

- 보험료 세액공제 등도 [연말정산간소화불러오기] 버튼을 이용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입력합니다.
- 보험료 공제 계산기 팝업창이 뜨면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불러올 해당 월을 선택하거나 [전체선택]을 누른 후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하고 공제대상금액 및 세액공제액을 확인한 후 [적용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의료비 공제 계산기 팝업창이 뜨면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불러올 해당 월을 선택하거나 [전체선택]을 누른 후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의료비 공제 계산기

**클릭!**  
도움말 열리기

• 귀속년도 2022  전체선택  선택해제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불러오기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구분	지출금액
① 총 급여	20,000,000
② 본인, 65세이상자, 장애인	1,000,000
③ 난임시술비	0
④ 미숙아·선천성이상아	0
⑤ 그 밖의 공제대상자 의료비	0
⑥ 실손의료보험금(본인)	100,000
⑦ 실손의료보험금(부양가족)	0
⑧ 소계(② + ③ + ④ + ⑤) - ⑥ - ⑦	900,000
공제대상금액	300,000
세액공제액	45,000

**1** 클릭! → 계산하기 적용하기 ← **2** 클릭!

- ①부터 ⑧항목 지출금액 중 더하거나 차감하여야 하는 경우 금액을 수정하고 [계산하기] 버튼을 눌러 공제대상금액 및 세액공제액을 확인합니다.
- 수정사항이 없으면 [적용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교육비 공제계산기 팝업창이 뜨면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불러올 해당 월을 선택하거나 [전체선택]을 누른 후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교육비 공제 계산기

귀속년도 2022  전체선택  선택해제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공제종류구분  교육비  교육구입비  재원학습비

조회된 내역이 없습니다.

(단위: 원)

구분	지출금액
소독자 본인	3,000,000
장애인 특수교육비	0
가족 1 <input type="text" value="대학생"/>	1,000,000
가족 2 <input type="text" value="취학전 아동"/>	0
소독자본인 공제대상금액	3,000,000
장애인 특수교육비 공제대상금액	0
취학전 아동 공제대상금액	0
초중고 공제대상금액	0
대학생 공제대상금액	1,000,000
공제대상금액	4,000,000
세액공제액	600,000

-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에는 없으나 공제대상 교육비 지출증빙이 있는 경우 [교육비 직접입력]을 클릭하여 입력합니다.
- 이때 불러오기 한 하단의 공제대상금액들이 사라지고 직접 입력할 수 있도록 입력란이 활성화됩니다.
- 상단의 본인 및 부양가족의 교육비 명세를 참고하여 추가할 교육비를 포함한 합계금액을 구분된 지출금액에 직접 입력하고, [계산하기] 버튼을 눌러 공제대상금액 및 세액공제액을 확인합니다.
- 수정사항이 없으면 [적용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월세액 세액공제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연도에 지급한 월세총액을 입력하면 공제세액이 자동 입력됩니다.(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공제 불가)
- 보장성보험료 및 의료비, 교육비, 월세액 세액공제는 한도 초과시 자동 조정 입력됩니다.
- 이외 세액공제내역도 도움말 등을 참고하여 직접 공제세액을 계산하여 입력합니다.

소득법상 세액공제 및 준비금 명세서를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단위:원)

※ 전자신고세액공제: 「소득세법」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에 해당하는 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은 결정세액과 1만원 중 적은 금액을 공제합니다.

구분	공제대상금액	적용률	세액공제	사업자등록번호
주택자금자입금 이자상환세액공제 <input type="text" value="도움말"/>			<input type="text"/>	
월세액 세액공제 <input type="text" value="도움말"/>	<input type="text"/>			
전자신고 이월 세액공제			<input type="text"/>	
전자신고에대한세액공제			20,000	
현금영수증발행세액공제			<input type="text"/>	
성실사업자 의료비 세액공제 <input type="text" value="도움말"/>	<input type="text" value="0"/>			
성실사업자 교육비 세액공제 <input type="text" value="도움말"/>	<input type="text" value="0"/>			
성실사업자 월세 세액공제 <input type="text" value="도움말"/>	<input type="text" value="0"/>		0	
상생협력에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input type="text"/>	

세액공제 합계 1,229,731

※ 아래와 같은 이유로 세액공제 합계는 세액공제 항목별 합계와 일치하지 않은 경우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특별세액공제(Max(보장성보험+의료비+교육비+기부금, 표준세액공제))와 월세액공제 합계액은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소득세법 제61조 제1항)  
 2.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Max(보장성보험+의료비+교육비+기부금, 표준세액공제)), 우리사주조합기부금세액공제, 정치자금기부금세액공제 합계액은 소득세법 제62조에 따라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외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소득세법 제61조 제2항)

○ 준비금명세서

조세특례제한법조문(제목)	선택		
준비금손금산입액 연도	<input type="text"/>	준비금손금산입액 금액	<input type="text"/>
준비금 환입액 당기환입액	<input type="text"/>	준비금 환입액 환입액 누계	<input type="text"/>
사업자등록번호	선택	상호	<input type="text"/>

<input type="checkbox"/>	조세특례제한법 조문(제목)	코드	준비금				사업자등록번호
			손금산입 연도	손금산입 금액	당기환입액	환입액 누계	
조회된 내역이 없습니다.							

-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입력합니다.(8p 참고)
- 입력내용 확인 후 화면 하단에 [저장 후 다음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 8) 기납부세액명세서

기납부세액명세서 내역을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기납부세액명세서		
구분	소득세	농어촌특별세
중간예납세액	1,100,000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	0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고지세액	0	
수시부과세액	0	0

원천징수세액 및 납세조합징수세액		
구분	소득세	농어촌특별세
이자소득	0	

- 중간예납 세액이 있을시 자동으로 나타납니다. 금액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직접 수정입력합니다.
-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 등은 확인하여 직접 입력합니다.
- 원천징수세액 등은 각 소득명세서 작성화면에서 입력한 원천징수세액 등이 자동 입력되어 있습니다. 수정해야 할 원천세액이 있는 경우 각 소득 명세서 작성 화면으로 이동하여 수정합니다.(19p 참고)
- 해당 사항을 입력 후에 [저장 후 다음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 9) 가산세명세서

가산세명세서를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가산세명세서	
구분	금액
종합소득금액	2,989,608 (단위: 원)
사업장 정보	
사업장	수입금액 52,416,239 (단위: 원)
무신고 가산세	감면 계산기

**ver-teht.hometax.go.kr에 포함된 페이지의 메시지**

가산세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 가산세 명세서를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산세 명세를 입력하지 않고 다음화면으로 이동하시려는 경우 "확인"을 누르시고, 입력하시려면 "취소"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 가산세명세서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 다음 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는 팝업창이 뜹니다. 가산세 명세를 작성하지 않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기 위해 [확인]을 누릅니다.
- 가산세 명세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 [취소]를 누릅니다.
- 가산세 화면에 들어왔으나 가산세 입력대상이 아닌 경우 화면 하단에 [저장 후 다음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 10) 세액계산

세액을 계산하는 화면입니다.

● **세액계산**
동영상(세액계산)    화면도움말

○ 신고기한이내 납부할 세액

종합소득세(33-34+35-36)	-920,730
농어촌특별세(51-52)	0

※ 개인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 별도 신고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소득세 신고 종료후 클릭 한번으로 간편하게 신고)

※ 소득세 추가납부세액, 납부특례세액 또는 농어촌특별세를 입력하시는 경우 [펼치기]를 누르시기 바랍니다.

세액계산 보기(펼치기) ▾

○ 나의 환급계좌 (본인명의계좌만 가능)

은행	-선택-	계좌번호
----	------	------

• 카카오톡, 토스뱅크는 한국은행에서 국제환급금 지급은행으로 지정하지 않아 환급계좌로 등록 할 수 없습니다.

• 소득세 환급금은 관할세무서에서 검토 후 6월말~7월초 입금예정입니다.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사실 그대로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납부세액을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많이 신고한 경우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됨을 알고 있습니다.  
 ※ 소득세 신고 법령 : 「소득세법」 제70조,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국세기본법」 제47조의 3

체크!
☐ 이에 동의하며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사전 작성된 항목 및 소득자료는 신고편의를 위한 참고자료입니다. 사실과 다른 경우 신고서를 수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전
제출화면 이동
클릭!

※ 소득세 추가납부세액, 납부특례세액 또는 농어촌특별세를 입력하시는 경우 [펼치기]를 누르시기 바랍니다.

세액계산 숨기기(접기) ▲

○ **세액의 계산**

구분	소득세	농어촌특별세
종합소득금액	19    37,580,722	
소득공제	20    10,450,000	
과세표준(19-20)	21    27,130,722	41    0
세율(%)	22    15.00	42    0.00
산출세액	23    2,989,608	43    0
세액감면	24    0	
세액공제	25    1,229,731	
종합과세(23-24-25)	26    1,759,877	44    0

- 최종 납부하거나 환급할 세액이 보여지며, 세액계산내역을 보고자 하는 경우 **세액계산보기(펼치기)**를 누릅니다.
- 기본적인 세액 계산은 기 입력된 명세서를 기준으로 자동 계산되어 보여집니다.
- 화면을 아래로 이동하여 입력내용이 맞는지 확인하고, **신고기한 내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확인합니다.
-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나의 환급계좌 항목에 은행 및 계좌번호를 입력합니다.
- 수정할 사항이 없으면 **“이에 동의하며 신고서를 제출합니다.”**에 체크 후 **[제출화면 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 11) 신고서 제출

▶ 신고서 제출
동영상(신고서 제출) [화면도움말](#)

소득자	●●●●	귀속년도	2022
신고유형	정기신고(31,기준경비율)		

○ 신고기한 내 납부할 세액

종합소득세	659,877 원
농어촌특별세	0 원

상세내역 펼치기 ▼

○ 환급계좌 정보

금융회사	계좌번호
------	------

○ 개인정보 지방자치단체(위택스) 동보 제공동의

소득세 신고서의 전화번호, 환급계좌번호, 세무대리인 사업자번호를 지방소득세 신고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위택스) 제공하

예 동의합니다. 체크!
 아니오 동의하지 않습니다.

신고서 제출 후 접수증과 납부서를 확인하여 5월 31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 별도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 소득세 신고 종료 후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클릭하면 간편하게 신고 가능

이전
신고서 제출하기
클릭!

- 신고내용에 오류가 없는 경우 “**신고서 제출**” 화면이 나타납니다.
- 신고내용을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단계이며 이상이 없으면, [개인정보 제공동의] 여부를 선택하신 후 화면 하단의 [신고서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와 별도로 지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 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 접수증

HomeTax, 국세청홈택스

사용자 ID	*****	사용자명	남****
접수번호	*****	접수일시	2023-04-20 21:30:13
접수결과	정상		

· 제출내역

상호(성명)	남****	사업자(주인)등록번호	*****
신고서종류	종합소득세 정기확정신고서	접수방법	인터넷(작성)
첨부한서류	6종	신고구분	정기(확정) / 정기신고

국세청홈택스에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별도 신고해야 합니다.

접수 상세내용 확인하기

인쇄하기 | 신고내역 조회 (접수증) | 납부하기 | 납부서 조회(가상계좌확인) | 송달장소 (변경)신고 | 증빙서류 제출 | 닫기

- 종합소득세 신고서 접수증이 화면에 보이면, 접수 결과 상태가 **정상**으로 나타나며, 인쇄하실 분은 **[인쇄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 하단에 “**접수 상세내용 확인하기**”를 체크하거나 접수증 화면을 아래로 스크롤하면 접수증 상세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 접수증

HomeTax, 국세청홈택스

종합소득세 납부(환급)할 세액	659,877	증빙준비필수 신고기한내 납부할세액	0
종합소득세 분납할세액	0	종합소득세 신고기한내 납부할세액	659,877

※ (중요) 접수증에 표시된 내용이 신고하고자 한 내용과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의) 정기신고인 경우 신고기한 내에 여러 번 신고하더라도 **최종 접수된 신고서만 유효한** 것으로 봅니다.  
 ※ (확인) 세무서 직원의 도움을 받아 신고한 경우에도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니 최종 접수된 신고서 내용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내) 신고서 접수완료 후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할 경우, '종합소득세' 첫화면에서 **[신고 부속 · 증빙서류 제출]**을 선택하여 전자제출할 수 있습니다.  
 ※ (안내) 종합소득세 정기신고(5월신고분) 환급금은 6월 말까지 지급예정입니다.  
 ※ 국세가 결정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별도로 결정청구를 하지 않아도 개인지방소득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 (안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경정청구는 제외)를 위해 「신고내역 조회 (접수증 · 납부서)」 또는 「전자신고결과 조회」 화면에서 「지방소득세 신고」 버튼을 클릭하세요.**  
 ※ 귀하의 성실 신고 납부에 감사합니다. 성실납세 우대제도(세금포인트 제도, 모범납세자 제도)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국세청 홈페이지 > 납세자권익의2 > 성실납세우대 > 세금포인트·모범납세자  
 ※ (안내) 체납된 세금이 있으면 그 체납된 세금을 총당되고 나머지만 지급합니다.

**체크!** →  확인하였습니다.

인쇄하기 | 신고내역 조회 (접수증) | 납부하기 | 납부서 조회(가상계좌확인) | 송달장소 (변경)신고 | 증빙서류 제출 | 닫기

- 내용을 확인하신 후에 아래 **[확인하였습니다]**에 체크하신 후 **[납부서 조회 (가상계좌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납부서 인쇄 및 전자납부 바로가기도 가능합니다.

**납부서 목록** ✕

주민등록번호	[ ]-*****	☞ 지방소득세 신고 및 위택스 이동 문의
성명	남****	110번 (365일 24시간 상담)
접수일시	2023-04-20 21:30:13	

※ 팝업창이 안 뜰 경우, [도구-팝업차단끄기] 설정 필요

과세연월	납부할금액	납부기한	납부서
202201	659,877	2023-05-31	출력

(안내) 위의 [납부할금액]은 농어촌특별세 또는 교육세 등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단, 지방소득세 금액은 불포함)  
 (중요) 납부할금액이 0 이하거나 납부기한이 지난 납부서는 출력되지 않습니다.  
 (안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위해 아래의 「개인지방소득세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하세요!  
 ※ 가상계좌로 납부하는 경우 납부서 출력 후 10~20분 후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이동
전자납부 바로가기
닫기

- 납부서를 조회하고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납부서 항목에서 **[출력]** 버튼을 클릭합니다.
-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신고납부기한 까지 인터넷뱅킹의 국세자진납부 코너 등을 통하여 납부하시거나, 홈택스 전자납부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세금신고
신고내역 조회(접수중·납부서)
신고 부속·증빙서류 제출
삭제내역 조회

·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최대 1년치의 신고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조회된 목록에서 <접수번호>, <접수서류> 항목을 선택하면 신고서원장, 제출서식목록을 각각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고 부속·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부속서류제출여부> 항목에서 Y로 조회됩니다.

· 상단의 [신고 부속·증빙서류] 화면을 통해 부속·증빙서류 상세내역 확인 및 추가 제출 가능

· 신고서 제출 후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를 통해 반드시 신고기간 마지막 날 23시 30분 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납부방법을 확인하려면 [납부방법 확인]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세법 개정으로 2023년 1월 이후부터 개인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 별도로 신고하여야 합니다.(신고내역 조회 후 <지방소득세> 항목의 「신고이동」 버튼 이용)  
 개인지방소득세 경정신청은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해야 하니 국세가 경정되는 경우 지방소득세는 별도의 경구가 없어도 환급됩니다.

· <납부여부> 항목은 전자신고 시 발급된 납부서로 납부한 경우만 납부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다른 전자납부번호로 납부서를 제출금 받아 납부한 경우에는 조회되지 않음

· '19년 1월 이후 신고한 내역부터 <납부여부>가 조회되며, 신고서의 세액과 납부부 세액(분납 등 추가 납부서 포함)이 일치하는 경우만 Y로 조회 됨

· 납부한 이후 납부결과 변경에는 10분 이상 소요될 수 있음(22시 이후 납부결과는 다음날 07시 이후 확인 가능)

**● 신고서 제출목록**

· 신고일자: 2023-03-21 ~ 2023-04-20 | 달일 | 1주 | 1개월 | 3개월 | 6개월 | 1년 |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 ]-\*\*\*\*\*

· 정보 공개여부:  예  부 ※ 정보 공개 대상: ① 신고내역의 상세(상영) 항목 ② 접수중의 상세(상영), 사업자번호, 사용자 ID, 사용자명 등록

조회하기

● 1건의 신고내역이 있습니다.

<input type="checkbox"/>	과세연월	신고서 종류	신고구분	신고유형	상호 (상영)	사업자(주민) 등록번호	접수방법	접수일시	접수번호 (신고서분기)	접수서류	접수중	납부서	제출자 ID	부속서류 제출여부	지방 소득세	납부여부
<input type="checkbox"/>	2022년 1월	종합소득...	장기...	장기신...	[ ]-*****	[ ]-*****	인터넷...	2023-04-...	2020-20-...	접수서류 7종	보기	보기	nam...	N	신고이동	신

1 / 총 1건(가)

- **[신고내역조회(접수중)]**로 이동하면 작성한 신고서, 납부서, 제출된 신고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지방소득세 신고이동]** 버튼을 클릭하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개인 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 별도로 신고하여야 하며 위택스, 스마트위택스(모바일)에서 원클릭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